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24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 엄태영·정동만·김정재

권영진 • 박충권 • 이만희

박덕흠 • 서천호 • 김소희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대상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의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징수된 과징금이 원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에게 쓰이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피해 중소기업이 피해액을 청구하고 수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소송 중 발생하는 비용이나 최종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적 비용 등을 부담하기 어려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제25조의7 및 제25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7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2. 제25조의3에 따라 징수된 과징금에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3.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4. 제3항 전단에 따른 차입금
- 5.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 ③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5조의7(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 · 구제를 위한 사업
 - 2.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교육·홍 보
 - 3. 기금의 조성 · 관리 · 운용에 필요한 경비
 - 4. 그 밖에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 제25조의8(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운용·관리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있다.
 -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6(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의 설치 및 재원) ①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한 하 도급거래로 인한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 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 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정부 외 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25조의3에 따라 징수된 과 징금에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3.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4. 제3항 전단에 따른 차입금 5.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급

<신 설>

<신 설>

③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등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 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위 원장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제25조의7(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사업
2.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정
책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교육・홍보

- 3.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4. 그 밖에 불공정한 하도급거 래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 제25조의8(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 운용·관리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